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884호 2024. 4. 18.(목)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2024-65호 사천시 도로명 부여 및 도로구간 변경 고시 ----- 1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2024-595호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 송달 공고 ----- 7
- 사천시 공고 제2024-614호 사천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9
- 사천시 공고 제2024-625호 사천시 환경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
- 사천시 공고 제2024-633호 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34

회 람										
--------	--	--	--	--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884호

사천시 고시 제2024-65호

사천시 도로명 부여 및 도로구간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7조,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사천시 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도로명 부여 및 변경에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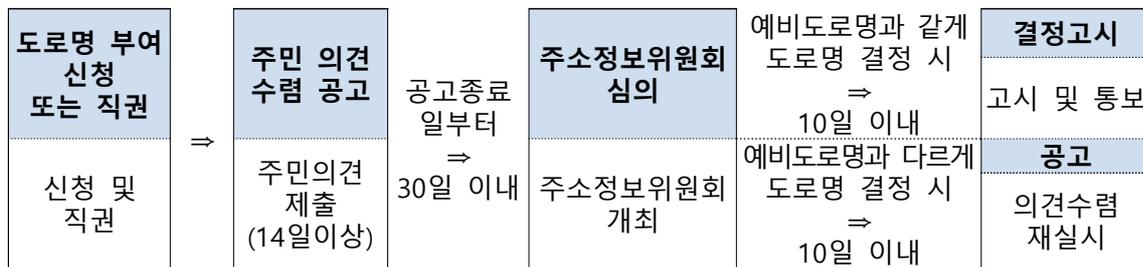
2024. 4. 18.

사 천 시 장

1. 고 시 일 : 2024. 4. 18.(목)
2. 고시방법 : 공보,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고시내용 : 도로명 부여 8건, 도로구간 변경 4건

※ 붙임 참고

4.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변경 절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 토지관리과 공간정보팀(☎831-2822)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로명 부여 및 도로구간 변경 조서 및 현황도 1부. 끝.

도로명 부여조서 및 현황도

연번	예비도로명	도로구간		길이(m)	폭(m)	위계	기초 간격(m)	기초번호	도로명 부여 사유	관할구역
		시작지점	끝지점							
1	항공산단1로	선진리 967-6	통양리 산9-10	1054	15	로	20	1/106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 (사천지구) 조성사업 도로개설	용현면
2	항공산단2로	통양리 367-3	선진리 926-25	290	12	로	20	1/30		
3	항공산단3로	통양리 359-1	신촌리 91-1	1000	15	로	20	1/100		
4	항공산단3로(중속)	통양리 365-2	통양리 368-6	358	8.4	로	10	A-1/A-72		
5	항공산단4로	통양리 513-6	통양리 377	500	15	로	20	1/50		
6	항공산단5로	신촌리 134	통양리 239-31	1000	26	로	20	1/100		
7	항공산단6로	신촌리 162-2	통양리 산10-1	1920	20	로	20	1/192		
8	통양4길	통양리 170-26	통양리 142-4	464	8	길	20	1/48		

부여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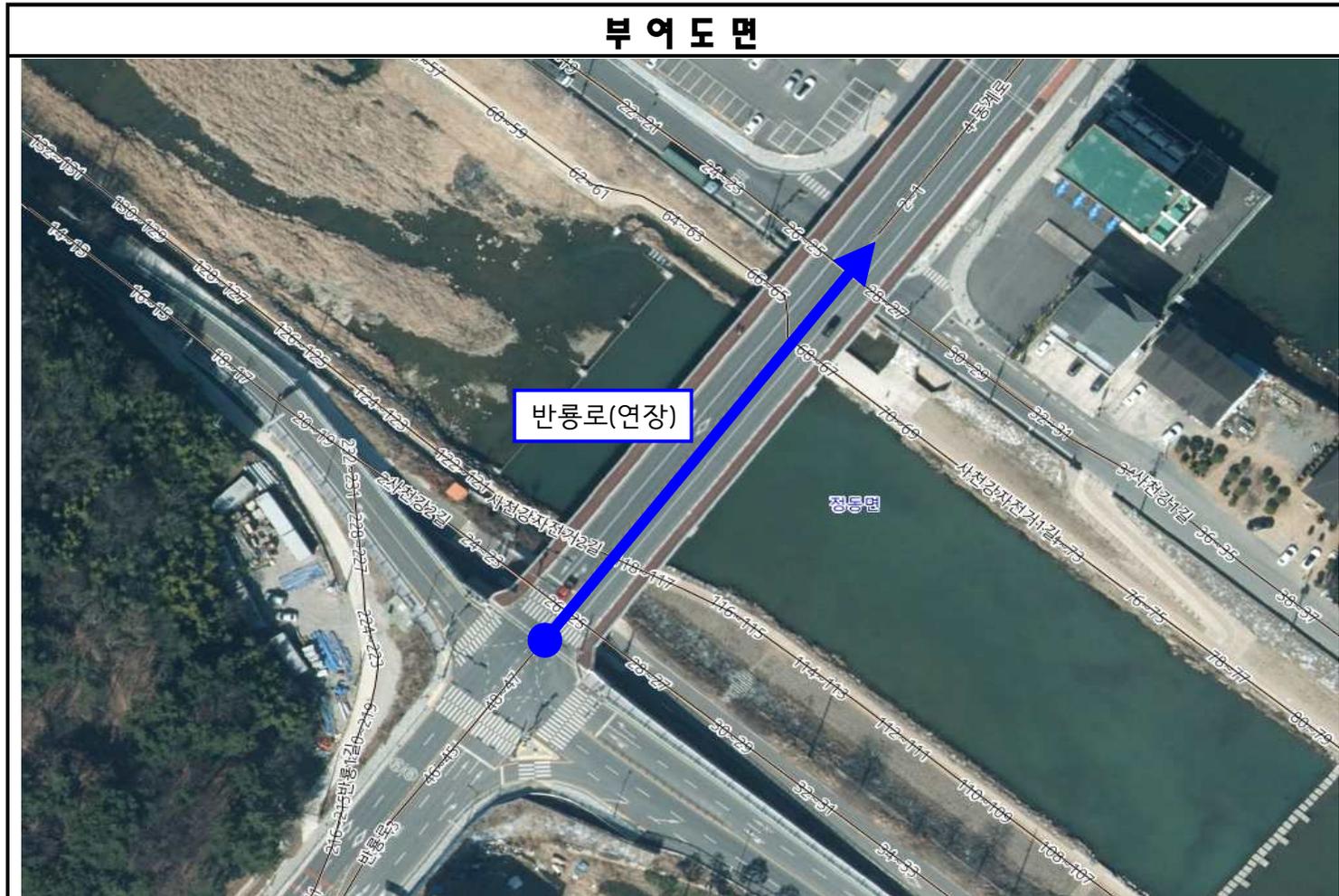


도로구간 변경 조사 및 현황도

연번	예비도로명	도로구간		길이(m)	폭(m)	위계	기초 간격(m)	기초번호	비 고	관할구역
		시작지점	끝지점							
9	통양3길	통양리138-9	신촌리585-1	874	7.5	길	10	57/230	주도로 일부 구간 폐지 (통양3길 57~230)	용현면
10	종포산단2길	신촌리161-5	신촌리62-2	70	8	길	20	37/46	주도로 연장 (종포산단2길 36~44)	용현면
11	신촌길	신촌리 382	신촌리 392-5	110	10	길	10	343/364	도로 선형 개선(변경) (신촌길342~364)	용현면

도로구간 변경 조서 및 현황도

연번	예비도로명	도로구간		길이(m)	폭(m)	위계	기초간격(m)	기초번호	도로구간 변경사유	관할구역
		시작지점	끝지점							
12	반릉로	예수리 409	예수리 826-107	105	14	로	20	51/62	'사주천년교' 도로명 부재로 '반릉로' 주도로 연장	정동면



사 천 시 공 보

제884호

사천시 공고 제2024-595호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정한 유효기간을 경과하여도 실시하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반송)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4. 18.

사 천 시 장

1. 공고제목: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연번	건설기계번호	소유자	등록원부상 주소	과세사유	과태료	감경과태료	비고
1	경남02도4419	(주)삼*레미콘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곤명1로 ***	정기검사 미필	3,000,000	2,400,000	폐문부재
2	경남02모1400	(주)세*공업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경서대로 26**	정기검사 미필	3,000,000	2,400,000	수취인불명
3	경남04보2476	주식회사 피*스코리아	경상남도 사천시 중앙로**(동금동)	정기검사 미필	3,000,000	2,400,000	폐문부재
4	경남02로2773	주식회사 문*천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대로 *** (노룡동)	정기검사 미필	3,000,000	2,400,000	수취인불명
6	경남02노2631	(주)광*성군자	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탐리 ***-2호	정기검사 미필	3,000,000	2,400,000	이사불명
7	경남02소6754	곽*원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항공로 ***	정기검사 미필	3,000,000	2,400,000	기타
8	경남04모1489	(주)용*산업	경상남도 사천시 송포공단길 72-**	정기검사 미필	3,000,000	2,400,000	이사불명

사 천 시 공 보

제884호

연번	건설기계번호	소 유 자	등록원부상 주소	과세사유	과태료	감경과태료	비 고
9	경남02로3276	주식회사 사*플랜트	경상남도 사천시 향촌4길 **	정기검사 미필	3,000,000	2,400,000	이사불명
10	경남04모1624	정*일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서포로 ***	정기검사 미필	3,000,000	2,400,000	폐문부재
11	경남02도2125	이*숙	사천시 서포면 대포1길 **	정기검사 미필	3,000,000	2,400,000	폐문부재
12	경남02노1412	김*식	사천시 지산길 **	정기검사 미필	3,000,000	2,400,000	폐문부재

3. 공고기간: 2024. 4. 18. ~ 2024. 5. 3.(15일간)

4. 공고방법: 사천시 공보 및 사천시청 홈페이지

4. 문 의 처: 사천시청 건설과 건설행정팀 건설기계 담당(전화: 055-831-3261)

5. 공시송달내용

가.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공고 기간 내 사천시 건설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간 내 의견 제출이 없거나 감경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에 이의 없음으로 간주하여 부과예정금액(감경하기 전의 금액)의 과태료 부과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공고기간이 지나면 「행정절차법」 제15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884호

사천시 공고 제2024-614호

「사천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내용을 반영하여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
 - (변경 전) 「사천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 (변경 후) 「사천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사 천 시 공 보

제884호

○ 책무(안 제3조)

-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련한 시장의 책무를 정함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신설(안 제6조)

- 종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를 폐지하고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신설(비상설)

○ 협력체계의 구축(안 제10조)

-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여성가족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여성가족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666, FAX : 831-6018)

사 천 시 공 보

제884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성명(단체명) :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사 천 시 공 보

제884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천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사천시의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에 따라 여성폭력방지과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보호·지원을 위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 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 천 시 공 보

제884호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여성보호를 위한 지역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사천시 여성폭력방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사 천 시 공 보

제884호

3. 위기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방지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시설의 대표나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가.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나.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응급구조 기관 또는 의료기관

다.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라.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 기관

3. 그 밖에 여성폭력 및 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84호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 폭력방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11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사 천 시 공 보

제884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사천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사천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를 “「사천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를 “여성폭력방지위원회”로 한다.

사천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추계 요약

가.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예산액 반영
- 2) 조례안 제3조(책무) 및 제11조(사업비의 지원)

나. 비용추계 결과

- 1) 추계의 전제
 -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지원 예산
 - 2024년 상담소 운영비 및 사업비 기준
- 2) 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세출	일반회계	460,520	477,068	494,445	512,690	531,848	2,476,571
	소 계	460,520	477,068	494,445	512,690	531,848	2,476,571
세입	보 조 금	246,163	256,829	268,029	279,789	292,137	1,342,947
	지 방 세	214,357	220,239	226,416	232,901	239,711	1,133,624
	소 계	460,520	477,068	494,445	512,690	531,848	2,476,571

※ 산출내역

- 1차년도: 상담소 운영비(253,418천원), 긴급피난처 운영비(77,576천원)
사업비(129,526천원) 기준으로 작성
 - 2차년도~5차년도: 상담소 및 긴급피난처 운영비 상승률 5% 반영
- 다. 부대의견: 없음

작성자: 여성가족과장 전홍국

사천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천원)

연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 계
재원조달		460,520	477,068	494,445	512,690	531,848	2,476,571
의존 재원	소 계	246,163	256,829	268,029	279,789	292,137	1,342,947
	보 조 금	246,163	256,829	268,029	279,789	292,137	1,342,947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214,357	220,239	226,416	232,901	239,711	1,133,624
	지 방 세	214,357	220,239	226,416	232,901	239,711	1,133,624
	세외수입	-	-	-	-	-	-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2024년 당초예산 기 반영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예정

3.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없음

작성자: 여성가족과장 전홍국

관 련 법 규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84호

사천시 공고 제2024 - 625호

「사천시 환경 기본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환경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정책기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환경보전시책에 대한 사항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기본이념, 기본원칙,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4조)
- 나. 시, 사업자, 시민의 책무와 학교 등의 역할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8조)
- 다. 환경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라. 환경영향검토 등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시책 사항(안 제10조~제22조)
- 마.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23조~제30조)

사 천 시 공 보

제884호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 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환경보호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762,

FAX : 831-6911)

사 천 시 공 보

제884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환경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사 천 시 공 보

제884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환경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사천시 환경 기본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천시 환경 기본 조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사천시, 사업자 및 사천시민의 책무를 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보전시책을 추진하며 사천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은 모든 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시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84호

③ 시의 모든 시책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생활환경·자연환경·지구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배려의 원칙
3.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4. 원인자부담의 원칙
5. 환경정보 공개와 시민참여의 원칙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5조(시의 책무) 시는 환경보전과 쾌적한 도시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인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과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3. 사람과 자연의 공존 및 양호한 경관의 보전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순환적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사 천 시 공 보

제884호

7.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8. 환경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환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 및 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이나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시민이나 단체의 환경보전에 관한 연구 및 홍보사업 등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며 시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시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솔선 참여하여야 한다.

1. 시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84호

2. 시민은 환경오염행위와 관련하여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한다.
3. 시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시민은 생활공간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깨끗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한다.

제8조(학교, 언론, 민간단체 등의 역할)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한다.

③ 민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한다.

제 2 장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시책

제9조(환경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천시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20년마다 수립하고 환경적·사회적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

②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와 전망

사 천 시 공 보

제884호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와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시장은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천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환경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도시기본계획 등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계획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환경영향검토) 시장은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절한 배려와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규제조치) 시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합한 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84호

제12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시장은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 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 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시, 시민, 사업자는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보전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여야 한다.

3. 야생 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절한 보전과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지구환경의 보전) 시장은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 시장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민 및 사업자에 의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 그 밖의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84호

제16조(환경조사 및 연구 등) ① 시장은 환경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감시·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의 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시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환경교육 및 홍보) 시장은 교육기관의 장 및 그 밖에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과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시민 참여)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결정·집행·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시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9조(정보의 공개)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은 범위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한다.

제20조(환경보전활동 재원확보 등) ① 시장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 추진, 연구개발 등에 소요되는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는 시민, 사업자 등이 조직한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884호

제21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시장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협력강화 등) ① 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지구환경의 보전·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참여하는 등 지구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제 3 장 환경정책위원회

제23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환경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주요 환경정책 및 정책 대안에 관한 사항
3. 환경 교육·홍보 및 환경보전 실천운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84호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환경보전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사천시의회 의원
2. 환경보전 또는 국토·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2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사 천 시 공 보

제884호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884호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보전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환경보전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사천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천시 환경 기본조례」 제15조”를 “「사천시 환경 기본 조례」 제23조”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84호

사천시 공고 제2024-633호

「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4월 1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정부합동평가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규제 조항을 삭제하고, 기업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여 건전한 기업활동 지원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사 천 시 공 보

제884호

2. 주요내용

가.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인식될 수 있는
“우선” 용어 삭제(안 제8조)

나. 기업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조항 신설(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우주항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 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우주항공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475,
FAX : 831-6044)

사 천 시 공 보

제884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사 천 시 공 보

제884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우선구매 및 판로지원)”을“(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우선하여 구매하도록”을 “구매하도록”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기업 정주여건 개선 등 지원) 시장은 기업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근로자들의 주거를 위한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2.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이용이 불편한 산업단지 내 근로자를 위한 교통비 또는 통근버스 지원
3. 그 밖에 근로자 및 기업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우선구매 및 판로지원) ① 시장은 시의 물품·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관내 기업 제품을 <u>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② (생략)</p> <p><u><신설></u></p>	<p>제8조(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① -- ----- ----- -- <u>구매하도록</u> ----- -----.</p> <p>② (현행과 같음)</p> <p><u>제16조(기업 정주여건 개선 등 지원)</u></p> <p><u>시장은 기업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근로자들의 주거를 위한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u> 2. <u>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이용이 불편한 산업단지 내 근로자를 위한 교통비 또는 통근버스 지원</u> 3. <u>그 밖에 근로자 및 기업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

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비용발생)요인

- 기업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숙사 임차료 및 교통비 또는 통근버스 지원(안 제16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소요예산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18,000천원
(교통비 또는 통근버스) 20,000천원
- 기업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숙사 및 통근버스(버스)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예상 연간 비용이 38,000천원으로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함.

작성자: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관 련 법 규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으로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25.>